

Part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관할규정 해석**

김기수 | 특허법원 판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등¹⁾의 소 관할규정 해석

김 기 수
특허법원 판사²⁾

1.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관할 규정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제1항에 따른 소³⁾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관한 관할규정은 2005. 1. 27.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었음(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언론중재법 제정 관련 국회의안정보상 관할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음
- 다만, 2005. 1. 27. 제정된 구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은 정정보도등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민사집행법 제303조는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제6항의 특칙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한 제26조 제6항 전단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됨[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 이에 따라 2009. 2. 6. 개정 언론중재법은 제26조 제6항을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는 것으로 개정함

1)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2) 본 발표문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일 뿐 법원의 공식적 입장과 무관합니다.

3) 피해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3. 정정보도청구의 관할 규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례

- 정정보도청구와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한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이 정정보도청구의 소와 관련하여서도 관련재판적에 따라 관할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됨(만일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 규정을 전속관할을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면 관련재판적 조항의 적용도 배제됨)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정정보도청구 관할규정을 전속관할로 보는 결정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의 언론전담부에서도 위 관할규정을 전속관할로 보고 판단을 하고 있음

- 1)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0. 12. 16.자 2019가합102102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26조는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전속관할에 속한다.

-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1.자 2022가합103231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⁴⁾

4)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위 결정은 부산고등법원 2023라5147 결정(이송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해 취소됨(다만, 취소이유를 보면, 언론중재법상 관할규정이 전속관할이 아니라는 해석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 사건의 정정보도청구가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764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원고는 피고들이 보도한 기사들이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⁵⁾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언론중재법 제26조는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편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고(민사소송법 제33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 규정 및 제30조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31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위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과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소송절차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조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27.자 2024가합105202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 ★언론전담재판부인 15부의 결정이라는 점이 의미가 있음

4) 인천지방법원 2025. 4. 15.자 2025가단210282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5. 28.자 2024가합101297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4.자 2024가합499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5)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것이고,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이므로, 이를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설행한다.

－ ★언론전담재판부인 15부의 결정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9. 15.자 2025가합347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8) 대구지방법원 2025. 9. 24.자 2025가합200939 결정(전속관할 위반 이송)

－ 위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과 동일한 취지

9)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재판부의 현재 실무례

전속관할임을 전제로 관할에 대한 보정명령을 보낸 후 이송하고 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0.자 2024가합1830 결정(이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자 2025가합15150 결정(이송)

4. 정정보도청구의 관할 규정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근거(사건)⁶⁾

1) 문언 및 체계상 근거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언 자체로 전속관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조항을 단순한 임의관할 또는 일반 토지관할 확인규정으로 본다면, 이 조항은 별다른 독자적 의미를 갖기 어려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은 민사소송법 일반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관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

－ 즉, 이 조항을 전속관할 규정으로 보아야만 조항의 독자적 규범적 의미가 살아나게 됨.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음)

6) 정정보도청구의 관할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종전 연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음. 2010년 김인검 부장판사가 언론재판실무에 관하여 작성한 글에, 언론중재법상 관할 규정은 전속관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논거는 설명하고 있지 않음.

2) 입법목적상 근거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성격이 다름. 이들 청구는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제도임. 손해배상은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정보도 등은 이미 형성된 여론과 정보환경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므로 신속성이 매우 중요
- 또한 정정보도 등 사건은 언론의 자유, 인격권, 국민의 알 권리, 공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의 자유가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정정보도의 필요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반론보도의 요건, 보도문 작성 방식 등 전문적 판단이 요구됨
- 이러한 사건을 일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기보다는, 피고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공익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일종의 관할집중 효과를 가지는 규정
- 따라서 이 조항을 임의관할 규정으로 보면, 정정보도 등 사건을 일정한 전문성과 절차적 통일성을 갖춘 재판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약화됨

3) 연혁적 근거

-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전속관할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앞서 본 것처럼 구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등에 관한 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가처분절차에 관한 관할은 민사집행법 체계상 전속관할로 해석됨(민사집행법 제21조는 민사집행법상 재판적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음[가처분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공익적 목적])
- 따라서 제정 당시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은 가처분절차에 따르는 정정보도등 사건의 관할을 특별히 정한 규정으로서 전속관할적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음
- 그 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9년 개정으로 정정보도청구의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로 바뀌었지만, 관할규정 자체는 유지됨. 즉, 위 2009년

- 개정 전후로 관할규정의 성격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음
- 나아가 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의 관할규정은 정정보도청구의 소 뿐 아니라 가처분절차가 준용되는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에도 적용되는 것인데, 동일한 관할규정을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의 관할에 적용할 때에는 전속관할 규정으로, 정정보도청구의 소의 관할에 적용할 때에는 전속관할 규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부자연스러움

4.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실무적 처리

- 문제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사건을 전속관할로 해석할 경우, 관련 재판적의 적용이 배제됨. 따라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와 병합하더라도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언론 피해자에게 소송상 불편을 끼치는 측면이 있음
- 해결 방안 (민법상 정정보도청구 활용): 우리 법원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외에 민법 제764조에 기한 정정보도청구도 허용하고 있음. 민법상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중재법상 전속관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손해배상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 부산고법 2023. 11. 9.자 2023라5147 결정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중 정정보도 등 청구 부분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어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전속관할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바는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래에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4조).”라고 기재하여 위 소장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정정보도 등 청구의 원인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인지,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써 구하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②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반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청구는 피고들의 보도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까지 구하고 있다.

③ 특히 원고들이 문제 삼는 보도는 2022. 3. 2.과 같은 달 3일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 9. 6. 비로소 제기되어 만약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 등 청구 부분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로 볼 경우 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간(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 등 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이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가 아닌 민법 제764조에 따른 청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의 실무: 현재 우리 법원 실무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정정보도청구의 관할이 의심스러운 경우, 곧바로 이송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관할 근거를 밝힐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원고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정정보도청구의 근거를 '민법 제764조상 청구'로 명확하게 특정함으로써 관할 위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아래는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부의 관할 관련 보정명령 예시임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부족인지대 198,000원¹⁾을 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원고들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반론보도)의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사항을 청구취지에 반영한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의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전속관할이 있음).